

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(1차) 공고

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한 「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

나. 접수기간 : 2022. 5. 9(월) ~ 5. 20(금)

다. 지원기간 : 신규 청년근로자 개시일로부터 1년

- 단, 사업 내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

라. 지원내용 :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기타 지원

- (인건비지원)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

구 분	부담주체	부담률	부담내용
인건비 지원	국·시비 보조	90%	· 월 1,800,000원
	기업부담	10% 이상	· 월 200,000원 이상
	추가부담		· 4대 사회보험료율에 의한 기업부담금
	청년부담	개인부담	· 4대 사회보험료율에 의한 개인부담금

·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

· 기업은 인건비 10%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, 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 등은 참여기업 부담

- (기타지원)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

· 1인당 연중 48시간(오프라인 교육 기준) 이상 이수

▶ 단,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은 인천시 및 인천상공회의소 승인 하에 조정 가능

▶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신청만 가능하며, 야간 또는 주말 교육은 불가 (단,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,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)

▶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내 24시간 이상 교육 수료 완료

▶ 청년근로자 사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(20시간) 및 심화교육(6시간) 이수 필수

▶ 교육 과정은 무역분야 주제의 교육 중 업체 및 청년근로자가 협의 후 선택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

받아 진행(단,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1회 필수 선택)

- ▶ 교육비는 업체가 선 지급 후 기관에 수료 증빙 자료(수료증, 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하면 지급하며, 사전 미승인 교육비는 지급불가
- ▶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하며, 환급과정 교육의 경우,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
- ▶ 교육 과정 미 이수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
마. 지원규모 : 원칙적으로 기업당 1명 지원(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)

- ▶ 기업 모집 미달 및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기업별 지원규모 변경 가능
- ▶ 타 직접일자리사업 미참여기업 우대선정

2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
가.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및 청년근로자

나. 자격요건

- (참여기업)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

- '20년~'21년 수출액 평균이 2,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(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) 제출 가능한 기업
-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고일 기준 체납된 금액이 없는 사업장
- 청년근로자 입사 후 교육 참가 등 사업 운영에 협조 가능한 사업장

- (제외대상)

-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-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
- ▶ 단, 사업주(또는 공동사업주)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사업참여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나, 채용 후 반드시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하며, 미가입시 지원 약정 취소 및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
-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
-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
-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
-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숙박 및 음식점업, 은행, 보험업,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
-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신청일 현재 국세,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
-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
-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의 장 등이 사업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

- (청년)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
 - ▶ 만 39세 기준 : 1982. 1. 1. 이후 출생한 자
-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
 - ▶ 타 사도 거주자의 경우, 1개월 내 전입 후 등본 1부 제출
- 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제외(졸업예정자는 가능)
 - ▶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3학년 출석일수 2/3이상 이수한 자로서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 - ▶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등으로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) 제출
- (제외대상)
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* 병역특례 채용일 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
 - * 채용되기 이전에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
 -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기업 대표),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
 -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
 - 소정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
 - 재택 근무자(단, 코로나19 등 상황 제외)
 - 타 직접일자리사업* 중복·반복 참여 중인 자
 - *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·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
- 다. 계약조건
 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「근로자」에 해당하고, 「소득세법」상 일용 근로자(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니며, 세무신고 대상이 되어야 함
 - 세전 기본급 기준 최소 월 2,000,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4대보험 가입 필수
 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
 - 근무시간 : 1일 8시간(주 40시간), 주 5일(월~금) 근무 원칙으로 함
 - 단, 유연·탄력근무제 적용 시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범위 내 협의 가능
 - 근무지 :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내
 - 본사, 지사,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에 있는 사업장에서

근무하여야 하며, 국내·외 출장 등이 빈번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- 담당업무 :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업무 수행 필수
-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임금, 기타 임금 조건, 근무 기간, 근무 장소, 업무 내용, 여성보호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
- 휴식시간,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따름

3. 신청절차

가. 신청방법

- 신청·접수기간 : 2022. 5. 9(월) ~ 5. 20(금)까지



나. 접수방법 : 비즈오케이(BizOK) 통한 온라인 접수

- <https://bizok.incheon.go.kr> (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접수)

다. 제출서류

- 1)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각 1부 [서식 1, 2] 참조
- 2)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·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 1부 [서식 3] 참조
- 3) 부정수급 방지 협약서 1부 [서식 4] 참조
- 4) 사업자등록증 1부
- 5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6) 수출 증빙실적 증명서류(무역협회 수출증명실적 등) 1부
 - *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수출 실적 기재 필수
- 7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8)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) 1부
 - *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 - *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

라. 선정방법

- 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참여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,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업과 예비순위 기업을 구분함

마. 추가서류 및 심사기준

구 분	평가항목	적용기간	배점기준	배점	
정성	적합성	· 사업계획서상 사업 적합성	- · 0~5점	5	
	운용계획	· 사업계획서상 고용인력 운영계획 (디지털 무역 관련 운영계획 기재)	- · 0~10점	10	
정성평가계				15	
기본평가	지역경제 기여도	· 본사와 공장 - 인천시내 소재(제조) 여부	현재	· 1개 소재시 3점, 모두 소재(등록) 5점 ※ 1개 소재는 필수	5
	시책사업 수혜여부	· 인천市 수출지원사업 수혜 여부 (국내전시회 참가 미반영)	전년도 (1년간)	· 미 수혜 10점 · 1회 수혜 7점 · 2회 수혜 5점 · 3회 수혜 2점 · 4회 이상 0점	10
	수출실적	· '20년~'21년 수출액 평균*	'20~'21 (2년간)	수출실적 배점 · 100만달러 이하 5점 · 100만 초과~200만달러 이하 10점 · 200만 초과~500만달러 이하 15점 · 500만달러 초과 20점 ※ 수출실적증명서 미 제출시 0점	20
	근무인력	· 전년도 근무인력	-	근무인력 배점 · 1명~9명 10점 · 10명~15명 15점 · 16명~24명 20점 · 25~49명 이하 25점 · 50명 이상 30점	30
기본평가계				65	
추가가점	유망가점	· 인천유망 중소기업, 비전기업 · 수출유망기업(중기청) · 글강기업(市), 중견성장사다리기업 · 인천시수출대상	수출:2년 인천:3년 비전:3년 글강:4년 대상:2년	· 건별 2점(최대 6점)	6
	시책가점	· 여성CEO/장애인 기업 · 가족친화기업 인증 ·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·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·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· 수출경영자협의회(등록회원) · 아름다운공장 · 뿌리기업	유효기간 및 5년간	· 건당 2점(최대 10점)	10
	수상가점	각종 포상(수상) 경력	5년간	· 인천시장(정부장관)이상 1건당 3점(최대 3점) · 유관기관(군.구청장, 정부지방청장)이상 1건당 2점	4
추가가점계				20	
총계				100	

- ▶ 운용계획의 산출지표 중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(B2B, B2C), 전자무역 등의 활동을 의미
- ▶ '20~'21년 수출액 평균이 미화 2,000만 달러 이하 업체만 지원 가능
- ▶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수출실적, 근무인력, 시책사업 수혜여부 순으로 선정

4. 사업 추진 일정

가. 추진일정



나. 채용공고

-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, 잡코리아, 사람인 등을 통한 구인등록 실시해야 함(구인등록 후 화면캡처하여 제출)
 - ▶ 필요시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한 관내 교육훈련기관 수료 인력 매칭 활용 가능
- 통합공고를 원칙으로 선채용 기업 선 지원 예정
 - ▶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별도의 사유로 운영기관에 지역 통보한 경우 미인정
- 운영기관은 필요시 구직자에 대한 동행면접 또는 면접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의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,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

다. 청년선발

- 청년근로자는 선정기업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채용을 원칙으로 함
 - ▶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1개월 이내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후순위업체에도 청년근로자 채용 기회가 부여되며, 이 경우 먼저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 예정(채용통보 순)
- 청년근로자의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

5. 문 의 처 :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이상호 주임

(Tel. 032-810-2853, E-mail. dltdg7914@incham.net)

붙 임 : 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. 끝.